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756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814,620원, 지방교육세 1,497,400원, 농어촌특별세 332,750원, 무신고가산세 2,162,9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27,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8. 농작물재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B는 2004. 1. 6.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redacted]시 C 전 2,6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토지 중 683/2,683 지분에 관하여 2016. 1. 2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지분을 '이 사건 토지지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8.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7. 7. 19.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농기구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31.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7. 8. 25.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면제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함을 이유로 당초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10,814,620원, 지방교육세 1,497,400원, 농어촌특별세 332,750원, 무신고가산세 2,162,9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27,5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 소속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B 개인보다 농업회사법인인 원고 명의로 창고신축허가를 신청하라'는 권유를 받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장기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된 것으로, 해제 전후에도 원고의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가 정한 지방세 추징 대상인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하였다가 면제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은 농업법인의 운영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여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농업법인이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되,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도 같은 조세법률인 구 상증세법상의 증여와 동일한 의미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 '증여'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각'은,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의 대구적인 의미, 즉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5헌바277 전원재판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는 **이전행위**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권이 B에게 복귀된 이상,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②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한편,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와 B가 2016. 1. 28.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취득행위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합의해제로 인하여 물권이 복귀하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상·무상의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의 '매각·증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③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사유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이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전의 구체적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가 2019. 1. 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영농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유도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로 기재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2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57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끝.